

순천대학교 정보화위원회규정

제정 2002. 2. 18

개정 2007. 6. 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23조에 따라 순천대학교(이하 '이 대학교'라 한다)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정보화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학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2. 대학 정보화 사업의 기획 및 조정
3. 대학 정보화 사업의 분석 및 평가
4. 대학 정보화 관련 장비 도입의 적정성 심사
5. 대학 정보화 관련 시설사업 계획의 심사 및 조정
6. 대학 정보화 및 정보기술(IT)분야 외부 지원사업
7. 기타 대학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. (개정 2007. 6. 26.)

③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및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이 대학교 정보화 사업을 대학의 발전전략, 교육 및 행정혁신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·조정·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소위원회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특정 분야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소위원회, 연구위원회 또는 연구팀 등(이하 '소위원회'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, 위원회 위원 또는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소위원회에는 조사·연구과제 또는 사업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 부서의 협조) ①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는 관계 부서 교직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,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관계자의 출석,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평가과 직원중 위원장이

지명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2. 2. 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